



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다진다

- 6월 7일(수),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(안)」 입법 예고

정부는 6월 7일(수)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(이하 ‘시행령’)」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.

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(이하 ‘통합법률’)」은 지난 5월 25일(목) 국회를 통과했으며, 6월 8일(목)에 공포되어 7월 9일(일)에 시행될 예정이다.

시행령은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과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」을 통합하여 제정하는 것으로, 통합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절차,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.

또한, 지방시대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·운영, 시·도 및 시·군·구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·운영, 지방시대기획단의 주요 임무와 지원 조직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.

특히, 신설되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·변경·해제 절차, 시·도가 특구 지정 신청시 수립하는 기회발전특구계획의 포함 사항 등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으며, 정부는 필요시 컨설팅 등을 통해 시·도가 기회발전특구계획을 원활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.

아울러, 통합법률을 통해 지원근거가 마련된 지방 사업장 신설 및 증설 기업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였다.

정부는 통합법률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만큼,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여 지방시대위원회 출범과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	책임자 담당자	과 장 사무관	송주호 (044-203-4410) 조동후 (044-203-4451)
담당 부서	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	책임자 담당자	과 장 사무관	김상진 (044-205-3301) 박주언 (044-205-3318)
담당 부서	기획재정부 지역예산과	책임자 담당자	과 장 사무관	오현경 (044-215-7550) 이재철 (044-215-7551)
담당 부서	균형발전위원회 총괄기획과	책임자 담당자	과 장 서기관	고상미 (044-251-3105) 고현웅 (044-251-3106)

□ 추진배경

-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체계 마련을 위한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정안 국회 통과('23.5.25.)
 - 동 법률에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절차, 기회발전특구 지정·변경,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
- 현행 「지방분권법 시행령」·「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」을 통합한,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정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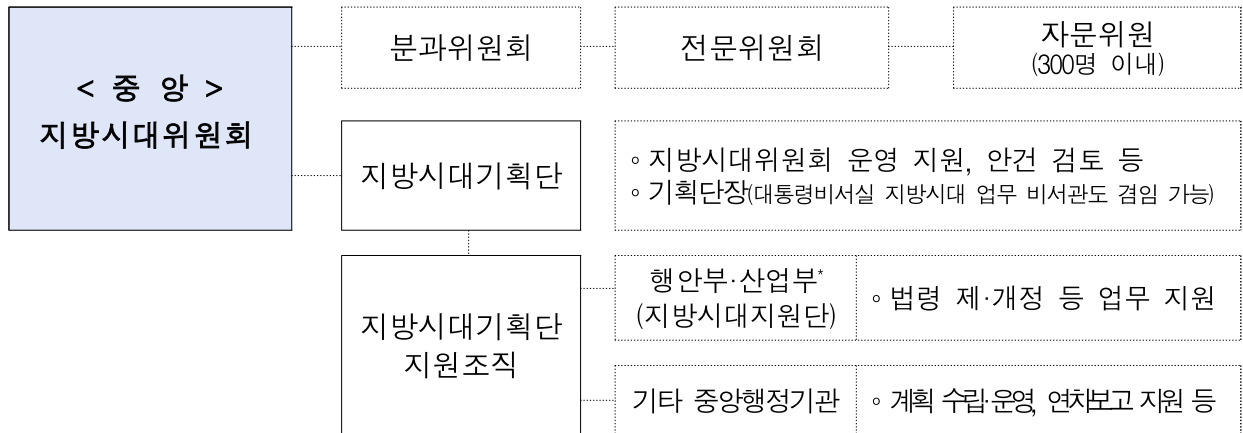
□ 시행령(안) 주요 내용

<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특별법 및 시행령(안)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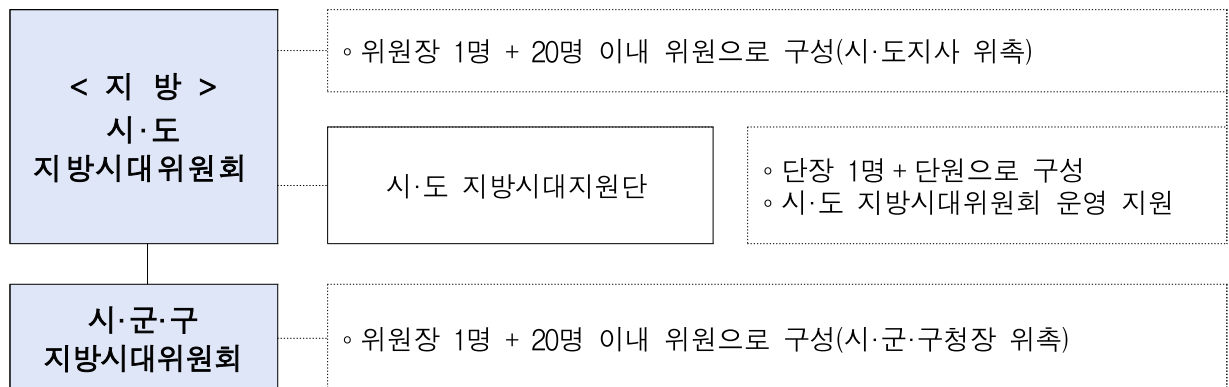
통합법률안	통합법률안 시행령
제1장 총칙(§1~§5)	제1장 총칙(§1~§4)
제2장 지방시대 종합계획(§6~§11)	제2장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(§5~§17)
제3장 지방분권 과제와 균형발전 시책의 추진(§12~§61)	제3장 지방분권 과제와 균형발전 시책의 추진(§18~§58)
제4장 지방시대위원회 (§62~§73)	제4장 지방시대위원회 등 (§59~§75)
제5장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(§74~§94)	제5장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(§76~§93)

- (총칙) 시행령의 제정 목적과 정의 규정의 위임사항 규정
 - “성장촉진지역”, “인구감소지역”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을 명시, “그 밖의 공공기관”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기관을 구체적으로 규정
- (종합계획 등) 지방시대종합계획 등의 수립절차·평가방법 구체화
 - (계획수립)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시, 행안부장관(지방자치분권)과 산업부장관(지역균형발전)이 업무 소관에 따라 지원
 - (평가방법) ① 계획 수립주체가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자체평가, ② 지방시대위원회의 종합평가, ③ 부진사업 대상 별도 심층평가 실시

- (균형발전·지방분권 과제) 「균형발전법」상 균형발전시책, 「지방분권법」상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운영·지원절차 등을 규정
 - ①기회발전특구 도입에 따른 지정·변경·해제절차 마련 (§20~§22),
 - ②지방 사업장 신·증설 기업 지원의 지원대상 구체화 (§23)
- (지방시대위원회)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체계



* ①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지방자치분권연구센터, ②산업연구원에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설치·운영 근거 마련(지방분권-균형발전의 균형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분권연구센터 규정 신설)



- (특별회계)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는 재원 및 예산절차 규정
 - (부칙)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(안)」이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시행령도 이와 동일하게 규정
- ※ 특별법(안) : 국회 본회의 의결(5.25.) → 국무회의 의결(6.5.) → 공포(6.8.), 시행(7.9.)

< 법률 규정 >

- 법 제23조(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)** 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·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지역의 시·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.
-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다. 이 경우 지방시대위원회는 **기업의 투자계획, 집적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**하여야 한다.
-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회발전특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지정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.
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,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.
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**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신청, 지정, 지정 변경·해제의 절차·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**

○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관련사항(승 20조)

신청 대상	①「산업입지법」상 국가사업단지, 일반산업단지, 도시첨단사업단지, 농공단지, ②「경제자유구역법」상 경제자유구역, ③「연구개발특구법」상 연구개발특구, ④「혁신도시법」상 혁신도시, ⑤「기업도시법」상 기업도시, ⑥지역혁신융복합단지, ⑦시도지사가 대규모 지방투자 기업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역
기회발전특구계획상 포함사항	①기회발전특구의 목적, 명칭, 위치 및 범위, ②특구지정에 따른 비용 및 효과, ③개발 및 관리방법, ④산업 육성전략, ⑤지원계획, ⑥투자 등에 필요한 규제 특례, ⑦그 밖에 기회발전특구 지정·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
지방시대위원회 고려사항	①충분한 국내외 기업의 입주수요 확보 가능성, ②근로자 등의 정주환경 확보·연계 가능성, ③필요 부지와 광역교통망·정보통신망·용수·전력 등 기반 시설 확보 가능성, ④개발의 경제성이 있을 것, ⑤지역 내 주요 산업과 연계 발전 가능성, ⑥그 밖에 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

○ 기회발전특구 변경·해제절차(승 21조, 22조)

